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32호

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124호(2004.05.06.)로 정비구역 지정 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14567호, 2017.02.08., 개정 이전 법률)」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7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10일
서울특별시장

1. 해제사유

본 구역은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(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)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되어 같은 법 제4조의3 (정비구역등 해제) 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고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(원안가결) 됨.

2.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예정구역 포함) 해제

가.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

구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기정	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	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	31,121.5	
변경	해 제			

나. 정비계획

○ 정비기반시설 계획

-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구 모				연장 (m)	사용형태	기 점	종 점	기 능	비고
	노형	류별	번호	폭원						
기정	중로	2	1	15	158	일반도로	익선동 131-1도	와룡동 172도 (돈화문로)	집산도로	
변경	소로	2	1	8	158	일반도로	익선동 131-1도	와룡동 172도 (돈화문로)	집산도로	폭원축소
폐지	소로	3	-	6	144	일반도로	낙원동 117-4도	낙원동 166-52도	국지도로	

- 녹지 결정 조서

구 분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
	명 칭	세 분 류		
기정	녹지	-	낙원동 82-6 일대	2,362.36
변경	폐 지			

※ 정비기반시설 폐지(변경)은 구역해제에 따라 관리방안으로 수립된 익선 지구단위계획을 반영.

○ 건축시설 계획

구분	위 치	대지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연면적 (㎡)	층수 (지상/지하)	높이 (m)	주용도
기정	익선동 165번지 일대	26,385.63	60이하	450이하	234,000이하	14/5이하	50이하	주거/판매
변경		폐 지						

3. 위치도 및 해제도면 : 붙임과 같음

4.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

- 실효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14567호, 2017.02.08. 개정 이전 법률)」 제4조의3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
 - 부칙<2017.02.08.> 제25조(일반적 경과조치) 적용
- 실효 일 : 고시 게재일

5. 관련서류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(02-2133-4637)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(02-2148-2675)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붙임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위치도 및 도면

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도면

□ 위 치 도



□ 정비구역 해제도

